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2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김성원 · 이현승 · 김은혜
고동진 · 박덕흠 · 김정재
주호영 · 김선교 · 조승환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 기술사가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계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7조(설계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 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 기술사 가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책임 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 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 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 ----- -----.</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 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u>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 ----- -----.
1. · 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u>

3. ~ 6. (생 략)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7조제2항</u>을 위반하여 설계 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 9. (생 략) ② · ③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 ----- ---. 1. <u>제7조제3항</u>----- ----- -----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